

# 마포구 망원청소년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9. 26.

북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9. 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2. 9. 13.

다. 상정일자 :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2022. 9. 26.)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아동청년과장

### 가. 제안이유

구립 망원청소년문화센터 위탁 운영이 2022. 12. 19. 만료될 예정으로 수탁기관선정심사 결과에 따른 재계약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지속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동의 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구립망원청소년문화센터 운영사무

2) 민간위탁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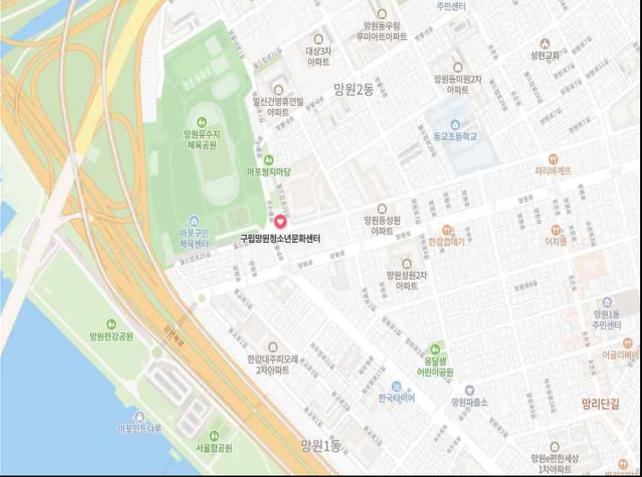
(가) 위탁기간 : 2022. 12. 20. ~ 2025. 12. 19.(3년)

(나)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방식(재계약)

(다)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라) 위탁시설 현황

<b>구분</b>	<b>구립망원청소년문화센터</b>
소재지	월드컵로 25길 164(망원동)
규모	연면적 959㎡(지하1~지상3층)
수용인원	210명
<b>전 경</b>	<b>위치도</b>
	

※ 現 구립망원청소년문화센터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19. 12. 20.~2022. 12. 19.(3년)
- 수탁기관: (사)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

(마) 소요예산 : 총1,312,400천원(전액구비)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비 고
<b>합 계</b>	<b>1,478,360</b>	<b>964,400</b>	<b>348,000</b>	<b>165,960</b>	
2023년	488,320	317,000	116,000	55,320	인건비 상승률 반영
2024년	492,720	321,400	116,000	55,320	"
2025년	497,320	326,000	116,000	55,320	"

\* 인건비 산정 : 관장1명, 부장1명, 정규직 5명, 계약직 3명(서울시 청소년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운영비 내역 : 일반·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참고>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비 고
2022년	428,550	312,550	116,000	60,320	

3) 추진일정

- (가) '22. 10.17.~10.28. : 민간위탁운영체 선정방침 수립 및 신청서접수
- (나) '22. 11. 4.~11.10.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개최
- (다) '22. 11. 18. : 위탁계약 체결

3. 검토보고 (김동원 전문위원)

- 본 안건은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를 위기 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 현 구립망원청소년문화센터 위탁사무는 사)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와의 위탁기간이 '22.12.19.까지로 다가옴에 따라 위탁업체를 재선정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항으로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3년,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여 관련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자료 [관계법령]

### ○ 청소년활동진흥법

####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8조(운영의 위탁)

-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5.6.>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